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92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이훈기 · 박지원 · 김 윤
박해철 · 정진욱 · 최민희
채현일 · 이재강 · 이광희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을”을 “지역(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결 토지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u>지역을</u>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⑭ (생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 ----- ----- ----- ----- ----- ----- ----- ----- <u>지역(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한다)</u> <u>을</u>----- -----. ② ~ ⑭ (현행과 같음)